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청 소 년 복 지 지 원 법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신건강임상심리사 이외 공신력 있는 임상심리 자격 소지자도 시·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관리업무수행이나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제1호나목4)를 6)으로 하고, 같은 란에 4) 및 5)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다목5) 중 “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”을 “정신건강임상심리사”로 하고, 같은 란 6)을 8)로 하며, 같은 란 가) 및 나)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란 7)을 6)으로 하며, 같은 란에 7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란 6)(중전의 7)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4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
- 5)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·학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·학회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7)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·학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·학회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
- 6)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개정안	
[별표 2]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(제14조제4항 관련) 1. 시·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		[별표 2]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(제14조제4항 관련) 1. 시·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	
구분	자격기준	구분	자격기준
나. 관리 업무 수행 직원	1) ~ 3)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<u>4) (생략)</u>	나. 관리 업무 수행 직원	1) ~ 3) (현행과 같음) <u>4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</u> <u>5)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·학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·학회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사람</u> <u>6) (현행과 같음)</u>
다.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	1) ~ 4) (생략) 5)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<u>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</u>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6) <u>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</u>	다.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수행직원	1) ~ 4) (현행과 같음) 5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정신건강 임상심리사</u> ----- ----- 6) 「 <u>국가기술자격법</u> 」에

<u>준 사람</u> <u>가) 「정신건강증진 및</u> <u>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</u> <u>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</u> <u>령」 별표 1에 따른 정신</u> <u>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</u> <u>격증을 소지한 사람</u> <u>나) 청소년상담복지 관</u> <u>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</u> <u>인 사람</u> <u><신 설></u> <u>7) (생 략)</u>	<u>따른 임상심리사 1급 국</u> <u>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</u> <u>사람</u> <u>7) 국민의 심리적 건강 증</u> <u>진을 목적으로 설립된</u> <u>단체·학회 중 여성가족</u> <u>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</u> <u>· 학회에서 시행하는 임</u> <u>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</u> <u>득한 사람</u> <u>8) (현행과 같음)</u>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276